

보도시점 2026. 9. 8.(화) 국무회의 의결 이후 (2026. 9. 9.(수) 조간)

「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 및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·의결

정부는 9월 8일(화)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「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 및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 개정안을 심의·의결했다.

①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* 시행일: '26.9.18.

◆ 소관 부서: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(044-202-7665)

「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정('26.9.18. 시행)으로, 공공부문 공무직, 기간제, 파견, 위탁·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정협의 틀이 공식화됨에 따라, 공무직위원회의 효율적 구성·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.

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,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,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, 분야별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각각 구성토록 하면서 위원의 임명·위촉,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.

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, 고용의 질과 공공 서비스 향상이라는 법 목적 실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②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* 시행일: '26.9.18.

◆ 소관 부서: 청년고용기획과(044-202-7423)

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도록 「청년고용촉진

특별법」이 개정됨에 따라,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였다. 이를 통해 정책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,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.

담당 부서	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 장	임희종 (044-202-7064)
		담당자	사무관	이주원 (044-202-7068)
담당 부서	노동정책관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	책임자	팀 장	신술원 (044-202-7666)
		담당자	사무관	이유석 (044-202-7665)
담당 부서	청년고용정책관 청년고용기획과	책임자	과 장	최윤미 (044-202-7761)
		담당자	서기관	박세은 (044-202-7423)

